서울특별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안 경 위

가. 발 의 자: 송도호 의원

나. 의안번호: 제1901호

다. 발의일자: 2020. 10. 14.

라. 회부일자: 2020. 10. 26.

2. 제 안 사 유

 서울시는 현재 친환경차(전기·수소버스) 보급정책을 추진 중으로 2025년까지 전기버스 3,476대 도입을 목표로 대폐차 수요에 맞춰 2021년부터 친환경차 (전기·수소버스)로 전면 교체, 연평균 약 559대의 전기버스를 도입할 예정임.

하지만 이러한 친환경차 도입계획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산업구조는 대규모 해외사업자와 공정한 경쟁을 하기에는 규모 및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부족한 실정 으로 관련 국내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해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이 재정지원시책 수립 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도록 함.

3. 주 요 내 용

가. 친환경차(전기·수소버스) 도입을 위한 별도의 지원시책 수립 시 반영할 지원 기준을 신설함(안 제5조).

4. 참 고 사 항

가. 관계법령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

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(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 타: 신·구조문 대비표 참조

5. 검 토 의 견

가. 개요

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시책을 수립하는 경우, 공정한 경쟁 환경 장려,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 등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임.

나. 검토의견

 안 제5조는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관련된 국내 산업 발전 및 보호를 위하여 차량 성능 개선이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음.

다만, 안 제5조 단서 조항에 따라 향후 재정지원시책을 추진할 때 국내산 차량에 한해 재정지원을 한다면, 「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」제3조 제4항1) 또는 「세계무역기구2)보조금협약」등 국제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에 가격경쟁력 확보와 같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.

또한, 현행 조례 제5조는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단순 명시한 것이나, 안 제5조의 단서 조항은 시장의 포괄적 책무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현행 조례 제3조(시장의 책무)에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.

¹⁾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(GATT,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) 제3조제4항 "체약국 영역의 산품으로서 다른 체약국의 영역에 수입된 산품은 동 국내에서의 판매, 판매를 위한 제공, 구입, 수송, 분배 또는 사용에 관한 모든 법률, 규칙 및 요건에 관하여 국내 원산의 돈종 산품에 부여하고 있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. 본 항의 규정은 교통수단의 경제적 운영에 전적으로 입각하였으며 산품의 원산국을 기초로 하지 아니한 차별적 국내 운송요금의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."

²⁾ 세계무역기구(WTO, World Trade Organization)

<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>

구분	개정안	수정안
조항	제5조의 단서 신설	제3조제3항 신설
내용	제5조(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 친화적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, 자율 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.	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에